

※ 정관변경 신규 대비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 제2조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6. <생략>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 - |
| | 7. <u>별정통신사업</u> | 7. 전기통신사업 | - |
| | <7의2 신설> | 7의2. <u>별정통신사업</u> | - |
| | <7의3 신설> | 7의3. 부가통신사업 | - |
| | <7의4 신설> | 7의4. 특수부가통신사업 | - |
| | 8. ~ 13. <생략> | 8. ~ 13. <현행과 같음> | - |
| |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 14.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15. 전자기기, 컴퓨터 관련 유통업 16. 전자기기, 컴퓨터 관련 무역업 | - |

| | | | |
|-------|--|--|---|
| | | <p>17.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업</p> <p>1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p> <p>19. 건강관리서비스업</p> | |
| | <p>14. 위 각항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기술용역, 전기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제반사업</p> | <p>20.<현행과 같음></p> | - |
| | <p>1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p> | <p>21.<현행과 같음></p> | - |
| 제3조 | <p>제3조(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그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u>국내 또는 국외에</u> 지점, 출장소, 사무소를 둘 수 있다.</p> | <p>제3조(본점의 소재지) 회사는 그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p> | - |
| 제9조의2 | <p>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p> <p>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u>종류주식</u>(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u>20,000,000주</u>로 한다.</p> <p>③ ~ ⑪ <생략></p> | <p>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1종 종류주식)</p> <p>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1종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 - |
| 제9조의3 | <p>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p> <p>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p> | <p>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2종 종류주식)</p> <p>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p> | - |

| | | | |
|-------|---|---|---|
| | <p>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u>종류주식</u>(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u>종류주식</u>의 발행한도는 <u>20,000,000주</u>로 한다.</p> <p>③ ~ ⑩ <생략></p> | <p>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u>2종 종류주식</u>(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u>종류주식</u>의 발행한도는 <u>10,000,000주</u>로 한다.</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 |
| 제9조의4 | <p><제9조의4 신설></p> | <p><u>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전환에 관한 3종 종류주식)</u></p> <p>① <u>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3종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u></p> <p>② <u>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u></p> <p>③ <u>종류주식의 우선 배당에 대하여는 제9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u></p> <p>④ <u>종류주식의 상환은 제9조의2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u></p> <p>⑤ <u>종류주식의 전환은 제9조의3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u></p> <p>⑥ <u>제5항에 의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 - |
| 제17조 | <p><u>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u></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p> | <p><u>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u></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p> | - |

| | | | |
|-------------|--|---|--|
| | <p>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 ④ <생략></p> | <p>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p>제18조</p> |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 <p>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 | |

| | | | |
|--------------------|--|---|---|
| | <p>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 ⑤ <생략></p> | <p>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 <p>제55조</p> | <p>제55조(중간배당) ① ~ ④ <생략></p> <p>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 <p>제55조(중간배당)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 - |